

특수교육 실태조사 장애유형별 조작적 정의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타 장애는 별도의 정의 없음. 장애 유형	법적 정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08 특수교육 실태조사 조작적 정의	진단 도구
시각장애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 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좋은 쪽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이거나 교정 상태에서 학습활동이나 일상생활을 위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맹 : 좋은 쪽 눈의 교정시력이 0.05미만인 자)(저시력 : 좋은 쪽 눈의 교정시력이 0.05이상 0.03 이하인 자)	· 원거리시력표 · 진용한 시력표
청각장애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농 : 좋은 쪽 귀의 청력 손실이 90dB 이상인 자로서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청각을 통해 음성언어 관련 정보의 처리가 불가능하여 학습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사람 난청 : 좋은 쪽 귀의 청력 손실이 60-89dB 이상이며,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는 청각을 통해 음성언어 관련 정보의 처리가 가능하나, 학습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사람	· 순음청력검사

정신지체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지능검사 결과 지능지수가 75미만인면서 적응행동에 결함을 가진 사람(사회성숙도 검사 결과 SQ 70 미만)	· KISE-KIT · K-WISC-III · KISE-SAB · K-ABS · 사회성숙도 검사
지체장애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원인에 관계없이 지체(체간 또는 사지) 기능이 부자유스러워 그대로 두면 장차 자활이 곤란한 사람	· 시지각발달검사 · 시각-운동 통합 발달검사 · 지각-운동발달 진단 검사 · BGT 검사 등
정서·행동장애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지적·감각적·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나.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라.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마.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다음의 특성 중 1가지 이상에 해당되며, 그 문제로 학업, 대인관계, 일상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가. 지적, 감각적, 건강상의 문제가 일차적 요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업수행이 부진한 사람 나. 다른 사람과의 적절한 관계 형성 및 유지가 어려운 사람 다. 늘 불행해 하며 공포, 위축, 우울한 기분을 자주 느끼는 사람 라. 규칙을 자주 위반하고, 다소 공격적, 반항적, 파괴적인 사람 마. K-CBCL 검사 결과 총점이 T 점수 70이상인 사람	· K-CBCL (아동청소년행동평가척도)

자폐성 장애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현저하게 비정상적이거나 발달이 지체되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이며 상동적인 행동이나 관심, 활동을 나타내어 학습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람 · CARS 진단 검사결과 전체점수가 30이상인 사람	· CARS
의사소통장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나.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다.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라.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나.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다.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라.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음운 검사 · 구문 검사 · 언어이해인지력 검사 등
학습장애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지능검사 결과 IQ 75 이상의 지능을 지니고, 학습 수준이 동연령 집단보다 2년 또는 -2SD 이상 차이가 나 특별한 지원을 요구하는 사람 · 단,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정서장애, 문화적 기회 결핍으로 인해 학력이 지체된 자는 제외	· K-WISC-III · KISE-BATT · 기초학습기능검사

건강장애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심장질환, 신장질환 및 간질환, 결핵, 천식, 간질, 백혈병, 혈우병, 당뇨병과 같은 급성 또는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근력, 지구력, 민첩성이 부족하며, 지속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병원기록부 참고
발달지체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영역에서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 단 전술된 9개 장애유형을 주 장애로 하지 않는 아동	· 병원기록부 · 영유아언어발달 검사 · 사회성숙도 검사 · K-WISC -Ⅲ 등